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141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김소희의원안(2)) ..... | 3  |
|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 3  |
| 나. 검토의견 .....                           | 14 |



## I. 개요

### 1.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141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소희의원 등 22인
- (2) 제 안 일 : 2024. 12. 3.
- (3) 회 부 일 : 2024. 12. 4.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과로사 예방 등 다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김소희의원안(2))

####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20%,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sup>1)</sup>은 대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5%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sup>2)</sup>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5%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일반) 또는 3년(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 구 분         | 기 본  |                      |    | 추가 <sup>주)</sup> |
|-------------|------|----------------------|----|------------------|
|             | 대    | 중견                   | 중소 |                  |
| 일반 (당기분 방식) | 최대 2 | 8~20 <sup>1)</sup>   | 25 | -                |
| 신성장·원천기술    | 20   | 20, 25 <sup>2)</sup> | 30 | 최대 10            |
| 국가전략기술      | 30   | 30, 35 <sup>3)</sup> | 40 | 최대 10            |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 종 전                                                                                                                                                                                                                                                                                                                                                                                                                                                                                 |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R&amp;D 설비(1/3/7)</li> <li>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li> </ul> </li> <li>③ 안전 설비(1/5/10)</li> <li>④ 에너지절약 시설(1/3/7)</li> <li>⑤ 환경보전 시설(3/5/10)</li> <li>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li> <li>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li> <li>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li> <li>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li> <li>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li> </ul> <p>※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p> |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div> <p>(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br/>*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p>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임대용 자산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

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7.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9%·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5년 2월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5%p 상향된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 구 분                        | 기본공제 |                      |    | 추가공제 <sup>주)</sup> |
|----------------------------|------|----------------------|----|--------------------|
|                            | 대    | 중견                   | 중소 |                    |
| 일 반                        | 1    | 5, 7.5 <sup>1)</sup> | 10 | 10                 |
| 신성장·원천기술<br>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 3    | 6, 9 <sup>2)</sup>   | 12 |                    |
| 국가전략기술<br>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 15   | 15, 20 <sup>3)</sup> | 25 |                    |
| 반도체 분야                     | 20   | 20, 25 <sup>4)</sup> | 30 |                    |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한편,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이 추가되었음<sup>3)</sup>.

3) 바이오의약품: 2023년 12월 세법개정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2025년 2월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4)]

| 구분                 | 분야                                     | 기술                                                                                                  |
|--------------------|----------------------------------------|-----------------------------------------------------------------------------------------------------|
| 미래형자동차             | 자율 주행차                                 |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
|                    | 전기 구동차                                 |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
| 지능정보               | 인공지능                                   | 학습 및 추론 기술, , 언어이해 기술 등                                                                             |
|                    |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
|                    | 클라우드(Cloud)                            |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
|                    | 빅데이터(Big Data)                         |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
|                    | 착용형 스마트기기                              |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
|                    | IT 융합                                  |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
|                    | 블록체인                                   | 블록체인 기술 등                                                                                           |
|                    | 양자컴퓨터                                  |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
|                    | 스마트 물류                                 |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
|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 기반 소프트웨어(SW)                           |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
|                    | 융합보안                                   |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
| 콘텐츠                | 실감형 콘텐츠                                |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
|                    | 문화콘텐츠                                  |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
|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 지능형 반도체·센서                             |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
|                    | 반도체 등 소재·부품                            |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
|                    |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
|                    | 3D프린팅                                  |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
|                    | AR 디바이스                                |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
| 차세대 방송통신           |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
|                    | UHD (Ultra-High Definition)            |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
| 바이오·헬스             | 바이오·화합물의약                              |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
|                    | 의료기기·헬스케어                              |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
|                    | 바이오 농수산·식품                             |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
|                    | 바이오 화학                                 |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
| 에너지·환경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
|                    | 발전시스템                                  |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
|                    | 원자력                                    |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

4)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었으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2025년 4월 기준).

| 구분             | 분야               | 기술                                                                |
|----------------|------------------|-------------------------------------------------------------------|
|                | 오염방지·자원순환        |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
| 융복합소재          | 고기능섬유            |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
|                | 초경량 금속           |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
|                | 하이퍼 플라스틱         |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
|                | 구리합금             |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
|                | 특수강              |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
|                |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
|                | 희소금속·소재          |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
| 로봇             |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
|                | 안전로봇             |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
|                | 의료 및 생활 로봇       |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
|                | 로봇공통             |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
| 항공·우주          | 무인이동체            |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
|                | 우주               |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
| 첨단<br>소재·부품·장비 | 첨단 소재            |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
|                | 첨단 부품            |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
|                | 첨단 장비            |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
| 탄소중립           |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
|                | 수소               |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
|                | 신재생에너지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
|                | 산업공정             |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
|                | 에너지효율·수송         |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
| 방위산업           | 방산장비             | 추진체계 기술 등                                                         |
|                | 전투지원             |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5. 2. 28. 개정)

##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 분야   | 기술                                                                                                                                                            |
|------|---------------------------------------------------------------------------------------------------------------------------------------------------------------|
| 반도체  |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
|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
|      |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
|      |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
|      |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
|      |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      |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
|      |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Bipolar-CMOS-DMOS), UHV(Ultra High Voltage),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 설계·제조기술(0.35 $\mu$ m이하) |
|      |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      |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
|      |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
|      |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
|      |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
|      |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
|      |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
|      |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
|      |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
|      |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
|      |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
|      |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
|      |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
|      |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
|      |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
| 이차전지 |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
|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
|      |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
|      |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
|      |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
|      |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
|      |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
|      |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
|      |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
|      |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

| 분야       | 기술                                                                   |
|----------|----------------------------------------------------------------------|
| 백신       |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
|          | 비임상 시험 기술                                                            |
|          |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
|          |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
|          |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
|          |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
|          |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
| 디스플레이    |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
|          |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
|          |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
|          |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
|          |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
|          |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
|          |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
|          | 마이크로LED 에피(Epi)·전사·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
| 수소       |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
|          |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
|          |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
|          |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
|          |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
|          |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
|          |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
|          | 수소환원제철 기술                                                            |
|          |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
|          |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
|          |                                                                      |
| 미래형 이동수단 |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
|          |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
|          |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
|          |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
|          |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
| 바이오 의약품  |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
|          |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
|          | 비임상 시험 기술                                                            |
|          |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
|          |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
|          |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
|          |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
|          |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5. 2. 28. 개정)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2조 7,340억원에서 2023년 4조 6,30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3조 99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소득세 | 910    | 954    | 1,057  | 1,081  | 1,013  | 1,080  |
| 법인세 | 26,430 | 26,342 | 36,173 | 45,221 | 28,562 | 29,910 |
| 합 계 | 27,340 | 27,296 | 37,231 | 46,302 | 29,575 | 30,990 |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0년 6,226억원에서 2023년 2조 79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실적회복으로 2025년에는 4조 2,88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소득세 | 217   | 491    | 810    | 1,036  | 1,269  | 1,295  |
| 법인세 | 6,009 | 12,969 | 21,187 | 19,764 | 16,134 | 41,590 |
| 합 계 | 6,226 | 13,459 | 21,997 | 20,799 | 17,402 | 42,883 |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1,660개가 1조 5,150억 1,8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18개가 3조 70억 4,0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수입금액 규모    | 중소기업   |           | 일반법인   |           |
|------------|--------|-----------|--------|-----------|
|            | 신고 법인수 | 금액        | 신고 법인수 | 금액        |
| 10억원 이하    | 4,370  | 26,931    | 1      | 11        |
| 20억원 이하    | 6,119  | 56,352    | 4      | 36        |
| 50억원 이하    | 11,814 | 203,843   | 17     | 536       |
| 100억원 이하   | 8,470  | 254,558   | 32     | 1,665     |
| 200억원 이하   | 5,506  | 278,567   | 57     | 2,980     |
| 300억원 이하   | 2,090  | 160,621   | 44     | 2,761     |
| 500억원 이하   | 1,797  | 198,988   | 93     | 7,155     |
| 1,000억원 이하 | 1,169  | 229,272   | 171    | 26,106    |
| 5,000억원 이하 | 324    | 102,498   | 872    | 319,207   |
| 5,000억원 초과 | 1      | 3,388     | 427    | 2,646,583 |
| 합계         | 41,660 | 1,515,018 | 1,718  | 3,007,040 |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8,926개가 4,013억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52개가 1조 3,789억 2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수입금액 규모    | 중소기업   |         | 일반법인   |           |
|------------|--------|---------|--------|-----------|
|            | 신고 법인수 | 금액      | 신고 법인수 | 금액        |
| 10억원 이하    | 1,063  | 2,172   | 2      | 104       |
| 20억원 이하    | 874    | 3,752   | 2      | 84        |
| 50억원 이하    | 1,744  | 16,690  | 9      | 80        |
| 100억원 이하   | 1,392  | 28,987  | 22     | 240       |
| 200억원 이하   | 1,520  | 59,975  | 76     | 2,187     |
| 300억원 이하   | 789    | 48,214  | 52     | 2,327     |
| 500억원 이하   | 757    | 70,227  | 98     | 3,921     |
| 1,000억원 이하 | 610    | 102,277 | 219    | 12,769    |
| 5,000억원 이하 | u      | 56,247  | 833    | 138,317   |
| 5,000억원 초과 | u      | 12,759  | 439    | 1,218,875 |
| 합계         | 8,926  | 401,300 | 1,752  | 1,378,902 |

자료: 국세통계포털

## 나. 검토의견

| 현행                                                                                                                            |    |                     |    |     | 개정안                                                                                                                                                              |    |                     |    |     |
|-------------------------------------------------------------------------------------------------------------------------------|----|---------------------|----|-----|------------------------------------------------------------------------------------------------------------------------------------------------------------------|----|---------------------|----|-----|
| <input type="checkbox"/>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                     |    |     | <input type="checkbox"/>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    |     |
| ○ 유형별 공제율                                                                                                                     |    |                     |    |     | ○ 유형별 공제율                                                                                                                                                        |    |                     |    |     |
| 구분(%)                                                                                                                         | 기본 |                     |    | 추가* | 구분(%)                                                                                                                                                            | 기본 |                     |    | 추가* |
|                                                                                                                               | 대  | 중견                  | 중소 |     |                                                                                                                                                                  | 대  | 중견                  | 중소 |     |
| 일반                                                                                                                            | 1  | 5, 7.5 <sup>1</sup> | 10 | 10  | 일반                                                                                                                                                               | 1  | 5, 7.5 <sup>1</sup> | 10 | 10  |
| 신성장·원천기술<br>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 3  | 6, 9 <sup>2</sup>   | 12 |     | 신성장·원천기술<br>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 3  | 6, 9 <sup>2</sup>   | 12 |     |
| 국가전략기술<br>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 15 | 15, 20 <sup>3</sup> | 25 |     | 국가전략기술<br>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 15 | 15, 20 <sup>3</sup> | 25 |     |
| 반도체 분야                                                                                                                        | 20 | 20, 25 <sup>4</sup> | 30 |     | 반도체 분야                                                                                                                                                           | 20 | 20, 25 <sup>4</sup> | 30 |     |
|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br>1, (~3년)7.5%, (4년~)5%<br>2, (~3년)9%, (4년~)6%<br>3, (~3년)20%, (4년~)15%<br>4, (~3년)25%, (4년~)20% |    |                     |    |     |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br>** 2030. 12. 31.까지 투자한 경우로 한정                                                                                                     |    |                     |    |     |
| <input type="checkbox"/> <신설>                                                                                                 |    |                     |    |     | <input type="checkbox"/> 산업재해예방세액공제(제24조의2 신설)                                                                                                                   |    |                     |    |     |
|                                                                                                                               |    |                     |    |     | ○ 적용대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지출<br>- 안전활동 교육훈련비<br>- 보호구 구입 및 유지관리비<br>- 안전인증 및 진단비용<br>- 종업원 건강증진 비용<br>- 안전보건조직 인력 노무비<br>- 안전점검비용<br>-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    |                     |    |     |
|                                                                                                                               |    |                     |    |     |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    |                     |    |     |
|                                                                                                                               |    |                     |    |     |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                     |    |     |

\* 김소희의원안 2024. 11. 15. 발의(의안번호 5607), 김소희의원안 2024. 12. 3. 발의(의안  
번호 6141)

□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하여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의 상향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안전교육, 종업원 건강증진 비용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산업재해예방시설이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함<sup>5)</sup>.

5)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시설(제12조제2항제5호 관련)

| 구분           | 적용범위                                                                                                   |
|--------------|--------------------------------------------------------------------------------------------------------|
| 1. 산업재해 예방시설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br>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종사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sup>6)</sup>

|  |                                                                                                                                                                                                                                                                                                                         |
|--|-------------------------------------------------------------------------------------------------------------------------------------------------------------------------------------------------------------------------------------------------------------------------------------------------------------------------|
|  | <p>위한 시설</p> <p>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p> <p>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설비</p> |
|--|-------------------------------------------------------------------------------------------------------------------------------------------------------------------------------------------------------------------------------------------------------------------------------------------------------------------------|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러한 조치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등이 포함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 산업재해와 원재료·가스·증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sup>7)</sup>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그런데 이와 같이 기업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재해율은 0.48%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감소하였으나, 재해자수는 10만 5,1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1명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1,5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명 증가하였음.

#### [2024년 1월~9월 산업재해 현황]

| 구분         | 2024년<br>1~9월 | 전년 동기      | 증감        | 증감율  |
|------------|---------------|------------|-----------|------|
| ○ 재해율(%)   | 0.48          | 0.49       | -0.01     | -2.0 |
| - 사고재해율    | 0.39          | 0.40       | -0.01     | -2.5 |
| - 질병발생률    | 0.09          | 0.08       | 0.01      | 12.5 |
| ○ 사망만인율(‰) | 0.72          | 0.72       | 0.00      | 0.0  |
| - 사고사망만인율  | 0.28          | 0.28       | 0.00      | 0.0  |
| - 질병사망만인율  | 0.43          | 0.43       | 0.00      | 0.0  |
| ○ 재해자수(명)  | 105,119       | 101,538    | 3,581     | 3.5  |
| - 사고재해자수   | 85,705        | 84,199     | 1,506     | 1.8  |
| - 질병재해자수   | 19,414        | 17,339     | 2,075     | 12.0 |
| ○ 사망자수(명)  | 1,567         | 1,494      | 73        | 4.9  |
| - 사고사망자수   | 617           | 590        | 27        | 4.6  |
| - 질병사망자수   | 950           | 904        | 46        | 5.1  |
| ○ 근로자수(명)  | 21,898,212    | 20,886,408 | 1,011,804 | 4.8  |

주)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4. 9월말 산업재해현황'

한편, 연도별 재해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3년 재해율은 2019년 대비 0.8%p 증가하였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재해율 및 사망자 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재해율      | 0.58   | 0.57   | 0.63   | 0.65   | 0.66   |
| 사망자 수    | 2,020  | 2,062  | 2,080  | 2,223  | 2,016  |
| 업무상 질병자수 | 15,195 | 15,996 | 20,435 | 23,134 | 23,331 |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한편, 현행법상 산업재해예방시설, 화재예방·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제율(대기업 1%, 중견기업 5%<sup>8)</sup>, 중소기업 10%)이 적용되고, 안전교육이나 안전점검비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투자에 대해 일반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후시설 교체,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활동 교육훈련비와 같은 인적투자를 늘릴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인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2024년)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구축하였으나 부족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35.7%, '거의 구축하지 못함'으로 답한 비율이 11.3%로 높은 수준이었음.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제일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안전보건에

8)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3년까지는 7.5%

필요한 예산 마련'(57.9%)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억)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0인(억) 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2024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다음으로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가 제시된 바 있음.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의무 준수 및 시설 투자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sup>9)</sup>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처벌 등 강화로 인한 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행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sup>10)</sup>'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인력이 증가한 기업이 63%이고 안전 관련 예산이 증가한 기업이 72%에 달함.

9)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

1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투자 현황, 정부 중대재해 예방정책 평가 및 중처법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16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

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세제지원은 실질적 유인효과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의 효용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를 우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시설별 차등을 두지 않고 포괄적·일관적인 지원을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개편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셋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저리에 지원해주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넷째, 산업재해 예방은 국가전략기술과 같이 한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별도의 적용기한을 규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만료 이후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었으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점감구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154 |
|--------------|